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. 8. 8 선고 2017가단843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영어조합법인 B

변론 종결 2018. 7. 18

판결 선고 2018. 8. 8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, 7, 8, 9, 10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신" 부분 34㎡ 지상의 조립식 패널조 단층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, 7, 8, 9, 10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"신" 부분 34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는 2007. 1.2. 별지 목록 기재

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,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, 7, 8, 9, 10,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(이하 '이 사건 토지 부분'이라 한다) 34㎡ 지상에 있는 조립식 패널조 단층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,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이만영

별지